

대리모 임신, 여성계 대응이 필요하다

아이가 없어 오랫동안 고민해 오던 불임부부들이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놀랄만한 소식이 아니다. 최근에는 시험관 아기의 아류라 할 수 있는 대리모 문제가 한창이다. 이것은 불임 가정의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리모 출산은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거나 자궁만을 제공하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자궁을 제공한 대리모는 출산과 동시에 친권을 포기하고 태어난 아기는 의뢰인 부부의 가정에 양자입양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인공수정아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 상으로는 아이를 낳은 대리모와 그 남편이 부모로서 친자권을 갖게 돼 있다. 따라서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가 본래의 부모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자입양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 대리모 공급회사 우리나라에서 판촉활동 벌여

또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유전자를 받은 어머니와 낳아준 어머니(자궁만 빌렸을 경우)가 다르거나, 자기를 원했던 어머니(의뢰인 어머니)와 실제 자기를 생기게 해준 어머니(대리모)가 다른 새로운 탄생 체험을 하게 된다.

또 이와 함께 대리모가 새로운 영리 사업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생명이 거래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등지에서는 대리모 구인광고가 개인뿐 아니라 대리모협회, 출산뱅크 등의 주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대리모 알선사업이 신종 영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정명, <인공출산의 법리와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한 대리모가 "나는 나 자신을 인큐베이터로 생각한다. 보수를 받고 자녀가 없는 부부를 위해 대리모로서 봉사한다"고 말했다(위책). 이 말은 대리모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업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 지난 4월17일 중앙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리모 공급회사가 우리나라의 S대 병원, C병원, M의원 등 유명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벌였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에서 주문을 받아 이미 수백건의 대리 임신을 성공시킨 성과가 있다는 이 회사는 "아기를 대신 낳아드립니다. 평균 26세, 지능지수 8



2에서 1백16의 건강한 대리모들이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시험관 아기는 85년 서울대 병원에서 첫번째 아기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1천명 가량에 이르며 대리모 임신은 89년 제일병원 산부인과와 노성일 박사팀이 시술에 성공한 것을 처음으로 하여 1백건 이상이 시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법적 규제 피해 우리 나라 병원 찾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대리모 출산으로 알려진 것은 언니와 형부의 수정란을 처제의 자궁에 착상시킨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대리모 수요는 대체로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여서 난자와 자궁이 거래되는 상업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관련 의사들은 주장한다. 영동 제일 불임 클리닉(원장 노성일) 의사는 그동안 대리모 임신 시술은 모두 불임여성과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난자를 사고 파는 비지니스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온 불임부부들의 고민을 일부분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회문제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씨받이'의 전통이 있었던 데다 아직도 '대 잇기'의 관념이 집요한 우리사회에서 대리모가 현대판 씨받이로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 일본의 불임부부들이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법적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업화의 조짐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불임부부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데다 법적 규제가 없고 시술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은 1회에 일본이 1백만엔, 미국이 6천에서 7천달러, 우리나라에선 2백만원 정도로 알려진다. 그러나 1회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기란 매우 드물고 대부분 3~4회 가량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부담은 훨씬 크다. 시험관 아기의 일종인 대리모 임신의 경우에는 대리모에게 지불되어야 할 비용이 있겠으나 그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인공수정 기술의 발달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돼 왔던

생명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혈연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고 있는것으로 세계적인 윤리 논쟁을 일으켜 왔다.

제3세계 여성들 출산도구화될 우려도

여기에 덧붙여 서구의 여성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피임방법을 개발시키고 시험관 아기를 통해 출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임신의 구속과 출산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듯했지만 결국은 여성을 새로운 기술의 실험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19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등지에서는 대리모 구인광고가 개인뿐 아니라 대리모협회, 출산뱅크 등의 주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대리모 알선사업이 신종 영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미국의 대리모 공급회사가 우리나라의 S대 병원, C병원, M의원 등 유명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벌였다.

연구원인 한국인 윤의선 씨는 "일본 여성들이 생식기술 자체에 관심이 높으며 일본인들이 대리 출산을 못하게 돼 있는 국내법을 피해 한국을 찾는 현상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가 한국에서의 대리 출산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서울 모 병원에 전화해 "한국에서는 대리 출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가"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씨받이 전통이 있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대답이 나오더라는 것. 윤 씨는 대리출산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몸에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대판 '씨받이'로 사회윤리 파괴

대리모 임신은 처음으로 보고된 89년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찬성하는 쪽은 '후손 없는 고통을 덜어준다'는 논리로 대리모 임신을 현대 과학기술의 시혜로 받아들였다. 반대하는 쪽은 대리모 임신 방식이 수정란을 시험관에서 채취수정시켰다는 것 뿐이지 과거의 '씨받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회윤리를 파괴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대리모 임신이 확산될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와 함께 찬반 논쟁도 벌어지게 된다. 이 논쟁에 여성계는 어떤 논리로 어떤 주장을 펼 것인가를 생각을 모아야 할 때다. <김효선 기자>

세계 판례 ① - 미국의 베이비 M 사건

의뢰인 부부에 친권 인정

아이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 대리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던 미국 법정이 '자(子)의 최선의 이익'에 입각해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는 새로운 견해를 보이게 된 사건.

85년 스티븐 부부는 미시건 대학 박사과정 중에 알게 되어 결혼하였으나 스티븐 부인의 불임으로 대리모 출산을 시도했다. 스티븐 부부와 대리모인 화이트헤드 부인은 대리모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한 후 아이를 출산하면 이후부터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스티븐의 성명을 그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 기록할 것. 임신 1년 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것. 스티븐이 지불하는 정신적 보상금을 받아들일 것. 스티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부인이 아이의 후견인이 될 것. 화이트헤드 부인은 아이를 유산시키지 말 것. 등이었다.

대리모인 화이트헤드는 사라라는 딸을 낳았다. 이 아이를 스티븐 부부는 멜리사라고 불렀다. 소송상으로는 'Baby M' 사건으로 명명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대리모가 출산 후 갑자기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 계약과는 달리 아이를 의뢰인부부에 돌려주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의뢰인인 스티븐 부부는 뉴저지 지방법원에 친자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뉴저지 사실심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대리모의 친권을 종료시켜 생물학상의 부에게 아이의 감호권을 부여하는 스티븐 부인과 M과의 양자결연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88년 뉴저지 대법원은 가족법 원칙과 원리를 적용해 생물학적인 부(스티븐)와 생물학적인 모(대리모 화이트헤드 부인)가 그 자의 법적인 부모가 되고 따라서 그 계약을 강제이행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자의 양육권 부여에 있어서는 생물학상의 부에게 인도하는 것이 M의 최선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뢰인 스티븐 부부에게는

친권을 인정하고 화이트헤드 부인에게는 방문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대리모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노력은 지난 수년간 미국의 21개주 이상에서 법정정 시도로 나타났으나 모든 주에서 양자법의 입양에 관련된 금지조항과 저촉되는 문제를 안고 계속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에는 12개의 대리모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결혼하는 부부 중 25% 정도는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부부로 진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모에 의한 출산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